



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관련 입법추진 결과 보고

2020. 12. 10.

사법지원실

I. 검토 배경

▣ 2020. 9. 24.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 결정사항

-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
- 민사·행정·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여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
- 공개하는 판결문은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TEXT PDF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
-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공개제한 신청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확정 판결서 공개제한신청 등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대법원 규칙과 예규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
- 미확정 판결서 공개 및 TEXT PDF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시스템 개발 등의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에서 하도록 함
-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함이 상당하고, 향후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에서 하도록 함

▣ 위 결정사항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 민사(행정, 특허 포함) 미확정 판결서 공개 및 TEXT PDF 형태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**민사소송법 개정안**이 2020. 11. 19. 가결되어 주요사항을 보고함

II. 제21대 국회 법률안 및 검토의견



▣ 제21대 국회 기존 법률안

- 민사소송법 개정안(조웅천 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: 3222)
- 민사소송법 개정안(이탄희 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: 3298)

▣ 기존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

- 판결서 공개 범위를 민사 미확정 판결서로 확대 ⇨ **찬성 의견**
- 판결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삭제 ⇨ **신중검토 의견**
 -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과 충돌 →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
 - [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연구·검토 결과] 미확정 판결서 공개 시 확정 판결서와 같은 방식의 비실명처리가 이루어져야 함
-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 ⇨ **찬성, 추가검토 의견**
 -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TEXT PDF 형태로 제공함에 찬성
 -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‘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’는 판결서 자체의 편집·수정 등이 가능한 형태를 의미하고, PDF 파일형식은 포함되지 아니하여 추가검토 필요
- 법원공무원의 형사상 면책규정을 삭제 ⇨ **신중검토 의견**
 -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
⇨ 형사면책 규정 삭제 시 법원공무원의 법률적 위험 노출 및 소극적 행정 우려

▣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대안 제시

- 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국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음
 -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통한 판결서의 비실명처리 유지
 -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’ 부분 삭제
 - 법원공무원의 형사상 면책규정 유지



- 구체적인 대안의 내용은 [별첨]과 같음

▣ 민사소송법 개정안(대안) 가결

- 2020. 11. 17. 제1소위에서 법원행정처 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
- 2020. 11. 18.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1소위가 마련한 대안을 의결
- 2020. 11. 19. 국회 본회의 가결(2023. 1. 1.부터 시행)

Ⅲ. 향후 계획

가.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

▣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따른 필요예산

- 시스템 개발예산(2022년 예산요구)
- 판결문 비실명화 위탁사업에 대한 일반용역비 예산(2023년 예산요구)

▣ 시스템 개발 예산을 2022년 예산요구서에 반영

-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비용(추정): 579,714,051원

변경 대상 시스템	금액(부가세 포함, 단위:원)
특허	1,520,822
민사	14,520,822
판결문공개	132,272,162
가사행정	1,520,822
비실명검수	426,409,202
송달	3,470,221
합계	579,714,051

▣ 2022년 상반기 시스템 개발 착수 ⇨ 시스템 개발기간을 단축하여 2022년 하반기 시스템 개발 완료

▣ 시스템 개발 완료 후 2022년 하반기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시범실시



-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(2023. 1. 1.) 전 시범실시
- 2022년 판결문 비실명화 위탁사업 예산(확정 판결서)의 잔액 범위 내에서 일부 민사사건의 미확정 판결서 공개 시범실시
 - ex) 1심 민사합의사건 + 고등법원 민사사건
- ▣ 판결문 비실명화 위탁사업 추가 예산을 2023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**2023. 1. 1.부터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전면실시**

나. TEXT PDF 형태로 판결서 제공

- ▣ 2021년 상반기 시스템 개발 착수 ⇨ 2021년 하반기 시스템 개발 완료
- ▣ 시스템 개발 완료 후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판결서에 대하여 TEXT PDF 형태로 제공 시행

다. 규정 정비

- ▣ 민사 미확정 판결서에 대하여도 확정 판결서와 같이 사건관계인의 공개 제한 신청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(2022년 하반기 추진)
 -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
 -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
- ▣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‘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 안내문’ (재판양식 A2216-1) 등 관련 재판양식 정비



[별첨]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대안

현행	조응천 의원안	이탄희 의원안	대안
<p>제163조의2(확정 판결서의 열람·복사)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(「소액사건심판법」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)를 인터넷,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. 다만,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</p>	<p>제163조의2(판결서의 열람·복사)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(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, 「소액사건심판법」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인터넷,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. 다만,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</p>	<p>제163조의2(판결서의 열람·복사)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(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, 「소액사건심판법」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인터넷,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. 다만,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</p>	<p>제163조의2(판결서의 열람·복사) ① (개정안 ①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</p>



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④ (생략)

가 제한되지 아니한 판결서(일부만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)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결서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 다만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가 제한되지 아니한 판결서(일부만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)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.

③ (현행 ②항과 같음)

④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



<p>⑤ <u>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,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방법과 절차</u>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⑤ <u>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</u>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 <p>⑤ (현행 ④항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 ⑤항과 같음)</p>
---	---	-------------------	--